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의료 동의서 및 원격 학습 증명서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발행일 2021년
11월 9일)

COVID-19/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아이는 2021-22학년에 원격 학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대면 학습의 중요한 혜택들이 있고 학생들, 직원, 가족들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강력한 보건 및 안전 규칙들을 실행중이기 때문에, 2021-22학년도 원격 학습은 특정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제공될 것입니다. 유자격 학생들은 유아원생부터 12학년까지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1) COVID-19/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원격 학습이 *요구되는* 건강 상태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 2)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미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백신을 맞을 자격이 *없고*, 학생 또는 가구 구성원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건강 상태이기에 의료 제공자가 원격 학습을 권장한 경우. 또는,
- 3) 학생의 부모(들) 또는 보호자(들)이 학생을 교육적으로 방치 중인 가능성이 있다고 아동 및 가족 복지청(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 CFSA)이나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의 가정 법원 사회 복지 부서(Family Court Social Services Division, FCSSD)에 신고된 경우.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의료 동의서 및 원격 학습 증명서*(“의료 증명 양식”) 또는 *교육적 방치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위한 원격 학습 신청서*(“교육적 방치 양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의료 동의서 및 원격 학습 증명서에는 어떤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학생 또는 가구 구성원의 건강 상태로 인해 2021-22학년에 원격 학습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적합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의료 동의서 및 원격 학습 증명서 양식(“의료 증명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식의 모든 섹션을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왜 교육적 방치로 DC 기관에 위탁된 부모/보호자들에게도 이 경로가 제공되나요?

팬데믹 중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DC는 학생의 교육적 방치 가능성이 있다고 아동 및 가족 복지청(CFSA)이나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의 가정 법원 사회 복지 부서(FCSSD)에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이 신고당한 학생도, LEA가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경우, 원격 학습을 통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시 행정명령 2021-6호는 학생의 부모(들) 또는 보호자(들)이 학생을 교육적으로 방치 중인 가능성이 있다고 아동 및 가족 복지청(CFSA)이나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의 가정 법원 사회 복지 부서(FCSSD)에 신고된 학생에게 지역 교육 기관이 원격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 증명서 및 교육적 방치 양식들이 인정되나요?

지역 교육 기관들(LEAs)과 학교들은 (1) 학생의 건강 상태상 COVID-19/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원격 학습 참여가 왜 요구되는지 설명해주거나, 또는 (2) 학생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미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백신의 접종 자격이 되지 않아, 학생이나 가구 구성원의 건강 상황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원격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료 증명서를 잘 읽을 수 있게 완전히 작성해 제출한 모든 학생의 원격 수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LEA와 학교들은 교육적 방치 양식을 원격 학습의 혜택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로서 인정할 것입니다.

원격 학습을 *요구*하는 의료 질환을 가진 학생들은 반드시 원격 학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세 개의 유사적 유형들에 대해서는, 2021-22 학년에 수용 가능한 학생 정원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원격 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LEA와 학교들이 어떤 학생(들)이 원격 수업 자리를 배정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LEA와 학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원격 학습의 필요와 성공적인 수행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원격 학습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LEA와 학교들은 의료 증명서 양식의 파트 IV나, 교육적 방치 양식의 파트 II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답변 내용을 심사해야 합니다.

제 아이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와는 무관하지만 가정 또는 병원 수업이 필요한 의료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가정 및 병원 수업을 희망하는 가족들은 LEA/학교의 표준 정책 및 절차들을 따라 가정 및 병원 수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OSSE가 5월에 발행한 의료 증명서 양식 버전들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예. OSSE가 2021년 5월에 발행한 의료 증명서 양식과 절차를 통해 원격 학습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2021-22 학년 내내 계속해서 원격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양식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의료 질환(들)도 원격 학습을 신청하는 타당한 이유로서 기록될 수 있나요?

예. 가구 구성원의 의료 질환에 대한 의료 증명서는, *가구 구성원의* 의료 질환으로 인해 원격 학습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신청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자격 조건 하에 유의하실 것은,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미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백신을 접종할 자격이 안되는 학생들만 이 고려 대상이 되며, 이러한 자격 상태는 본 의료 증명서 양식의 파트 III에 학생의 의료 제공자에 의해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원격 학습이 승인된 학생들이 대면 과외 활동이나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격 학습이 승인된 학생들은 과외 활동 및 체육 활동을 비롯해, 학교 내 그 어떤 대면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자격과 관련된 업데이트된 의료 증명서 양식에 새롭게 추가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학생 또는 가구 구성원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건강 상태이기에 의료 제공자가 원격 학습을 *권장한* 학생은,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미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백신을 맞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원격 학습 이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새로운 의료 증명서 양식의 파트 III에 학생의 나이, 의료 질환, 또는 기타 (반드시 규명) 내용을 포함해, 학생이 백신 무자격자인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가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건강 질환이 있다고 기록한 학생은, 학생의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원격 학습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이제 5세 아동까지 접종이 허용됩니다. 이 말은, 의료 제공자가 원격 학습을 *권장한*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의료 증명서 양식과 절차가 5세 미만의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5세 이상의 학생이 또 다른 이유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자격이 안 되는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서류 요건을

확인하시려면 위 FAQ를 참고하십시오.

의료 증명서와 교육적 방치 양식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가요?

업데이트된 의료 증명서와 교육적 방치 양식은 2021-22 학년 전체 기간 동안 원격 학습 승인의 용도로 유효합니다. 또한 원래 OSSE 의료 증명서 양식과 절차 하에 원격 학습을 승인받은 학생들은 이제 자동으로 2021-22 학년 내내 원격 학습 이용 자격을 갖게 됩니다.

2021-22학년 원격 수업을 승인받으려면 언제까지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DC 공립학교들과 각 공립 차터 지역 교육 기관은 작성된 의료 증명 양식과 교육적 방치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알릴 것입니다. 가족들은 확실한 날짜를 확인하려면 아이의 학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혹시 제 아이가 원격 학습 승인을 받았다가 학기 중간에 다시 대면 수업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 결정은 LEA/학교 측의 판단에 의해 이뤄질 것입니다. 학교는 운영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그리고 학생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허락하는 대로 학생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도록 장려됩니다. 의료 증명서 절차 하에 원격 수업을 승인받은 학생 중 학기 중간에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 대면 활동에 복귀해도 좋다는 의료 제공자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출하거나, 또는 자신의 LEA/학교가 지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마감일이 지난 후, 제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 등록하거나 새로운 의료 질환에 걸릴 경우, 또는 교육적 방치 가능성으로 인해 저희 가족이 CFSA에 신고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들이 위의 마감일이 지난 후에 원격 학습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려면 아이의 학교에 연락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의료 증명서 양식과 교육적 방치 양식을 비롯해 원격 학습 등록과 관련해 질문이 있는 가족들은 학교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 및 복구 노력에 대한 리소스와 정보를 보시려면, coronavirus.dc.gov를 방문하십시오.